

2. 所得稅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總理令 第562號 1996. 3. 30

소득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제12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영 제40조의2 제4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업중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업복지사업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자영예술가 및 자영경기업에 한한다), 기타 서비스업(세탁업, 이용 및 미용업, 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예식장업, 육탕업을 제외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중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수상운수유지서비스업에 한한다)

6. 제88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개업 또는 폐업시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영 제62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인 월은 1월로 한다.

영 제62조 제1항에 의한 상각 범위액

$$\times \frac{\text{당해 과세기간의 월수}}{12}$$

제3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 및 상각비율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영 제63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승인·변경승인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35조중 “영 제67조 제6항”을 “영 제67조 제5항 제2호”로, “공구”를 “공구(금형을 포함한다)”로, “간판등”을 “간판”으로 한다.

제37조 제2항중 “양도한 자산이 속하는 내용연수별 자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의 자산가액 및 양도부분의 가액은”은 “양도한 자산의”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 제2항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영 제80조 제1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각호의 1 또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영 제84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변경전 사업장 또는 변경후 사업장에 적용되는 영 제84조 제4항 제1호 각목에 규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①영 제10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청구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02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전환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전환청구일(전환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사업연도중에 최초로 전환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전환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부터 당해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거택보호대상자 증명서류) 영 제106조 제6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 사본을 말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2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는 당해 보험증권의 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으로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각각 갈음할 수 있다.

제6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을 제외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6조중 “10월 31일”을 “11월 30일”로 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1세대주택의 범위) ①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등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③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법에 의한 학교(동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제외한다)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사실 또는 수

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의무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단서중 “거주하던 주택”을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이 조에서 “성업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등에 관하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성업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 신청서 및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한다.

제74조 전단중 “영 제156조 제2호”를 “영 제155조 제15항”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7조 제1항 본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78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0조 제3항 제2호중 “지수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동호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으로 한

다.

제80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취득당시 영 제164조 제4항 및 도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전기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전기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⑥ 영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8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

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 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left(\frac{\text{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발행주식총수}} + \frac{\text{1주당 순손익액}}{100\text{분의 }15} \right) \div 2$$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 개시·폐업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제81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외의 주식등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다.

제81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중 “영 제165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영 제144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영 제165조 제1항 제3호 가목”으로 하고, 동조 제7항(중전의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 시가로 하는 가액

$$\begin{matrix} \text{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 \text{대하여 1985년 1월1일이후} \\ \text{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end{matrix} \times \frac{\text{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text{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 \\ \text{시가를 1985년 1월 1일이후} \\ \text{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 \text{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제82조 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전까지 양도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시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84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분납하는”을 “법 제112조 및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 및 물납하는”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감면되는 세액”을 “감면되는 세액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의 분리과세방법등) ①영 제18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도해지가 가능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의 경우는 당해 중도해지가능일을 최종상환일로 보아 신탁기간을 계산한다.

②영 제18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 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상여의”를 각각 “상여등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상여액”을 각각 “상여등의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5조 제5항에 규정하는 납세지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 영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영 제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4. 영 제59조 제4항에 규정하는 보험금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5. 영 제60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 의한다.
6. 영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 영 제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 영 제64조 제2항 및 영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신고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7. 영 제8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대비 지출명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8. 영 제9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9. 영 제102조 제8항 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10. 영 제116조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1. 영 제1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업)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12. 영 제1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재해 손실세액공제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13. 제1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에 납부세액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14. 영 제1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전출국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27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와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16. 영 제13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17. 영 제13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18. 영 제1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현황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19. 영 제15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20. 영 제18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별지 제21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2)으로 갈음할 수 있다.
 21. 영 제187조 제3항에 규정하는 분리

- 과세장기저축중도해지명세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22. 영 제187조 제6항에 규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 및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2)에 의한다.
23. 영 제187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다.
24. 영 제1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2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2)에 의한다.
25. 영 제19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1) 또는 별지 제23호서식(2)에 의한다.
26. 영 제200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영 제21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4호서식(2)에 의한다.
27. 영 제19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28. 영 제19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29. 영 제20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은 별지 제27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2)에 의한다. 다만, 법 제7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3)에 의한다.
30. 영 제211조에 규정하는 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1) 또는 별지 제28호서식(2)에 의한다.
31. 영 제212조에 규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29호서식(1) 또는 별지 제29호서식(2)에 의한다.
32. 영 제21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33. 영 제21조에 규정하는 이자·배당원천징수는 별지 제31호서식(1) 또는 별지 제31호서식(2)에 의한다.
34. 영 제22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동)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35. 영 제222조에 규정하는 감사원증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조사원증에 의한다.

36. 제66조에 규정하는 소득세중간예납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37. 제90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38. 제9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 세액환급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영 제55조 제4항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지급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에 의한다.

2. 영 제5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3. 영 제57조 제4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4. 영 제58조 제5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명세서 및 영 제58조 제6항에 규정하는 특별수선 및 특별수선충당금사용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

15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조정명세서에 의한다.

5. 영 제79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

6. 영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명세서는 제102조 제2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 의한다.

7. 영 제10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는 별지 제37호 서식에 의한다.

8. 영 제10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9. 영 제1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10. 영 제121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11. 영 제1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별지 제40호서식(2)로 갈음할 수 있다.

12. 영 제1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합산

대상배우자자산소득명세서는 별지 제 40호서식(1)에 의한다.

13. 영 제135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과 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의한다.

14. 영 제136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과 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에 의한다.

15. 영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동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 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 사업자별 분배명세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16. 제5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2호서식 (1) 또는 별지 제42호서식(2)에 의한다.

17. 제5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의료비지급명세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18. 제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다.

19.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별지 제4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에 의한다.

20. 제58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

한다.

21.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102조 제3항 본문중 “영 제132조 제3항”을 “영 제132조 제2항”으로 한다.

10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7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승인신청은 별지 제86호서식에 의하며,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승인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다.

총리령 제534호 부칙 제2항중 “제29호의 2”를 “제29호”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2. 채권등의 매도내역 란중 보유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유기간		
.	.	.부터
.	.	.까지

별지 제9호의2서식 작성요령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유기간”란에는 발행일(또는 직전 원천징수일과 매도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제25호서식 ⑥란중 “근로소득”을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중 “교(학·총)장”을 “(교육기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뒷면 3. 세액의 공제 및 감면란에는 다음을 추가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앞면 기술개발준비금조 정명세서(1) ⑤설정율란 “3/100(기술집약 적 산업 4/100)”을 “3/100(4/100, 5/ 100)”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 기술개발준 비금조정명세서(1) 작성요령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 작 성요령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⑤설정율란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집 약적 산업의 경우에는 4%, 자본재산 업의 경우는 5%를 적용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1) 부표 뒷면 작성요령 제8호중 “600만원”을 “2,400만원”으로 한 다.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부 표]·[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40호서 식(1)]·[별지 제40호서식(2)]·[별지 제 46호서식]·[별지 제55호서식]·[별지 제 59호서식]·[별지 제68호서식]·[별지 제 82호서식(1)]·[별지 제84호서식] 및 [별 지 제84호서식 부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1)] 및 [별지 제13호서식(2)]를 각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별지 제40호서식 (1)부표]·[별지 제40호의2서식]·[별지 제40호의3서식]·[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별지 제85호서 식]·[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한다.

제3조(양도소득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 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4조(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 53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례) 제72조 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2월 31일 현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종전주 택을 이 규칙 시행후 1996년 4월 30일 까지 매각의뢰를 신청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경매·공매가 진행중인 경 우에는 이 규칙 제7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토지의 전기기준시가의 산정에 관

한 특례) 제8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9월 1일부터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의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times \frac{1989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제7조(중도해지가 가능한 개발신탁수의증권의 신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6호의 개정서식, 제59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76호의 개정서식, 별지 제82호서식(1)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대한 경

과조치) 제4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20호·제34호·제37호 내지 제40호·제45호 내지 제47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0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제10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법 또는 영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등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의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25호”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접대비지출명세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							
⑥ 사업장소재지	☞							
. 기간중 접대비발생액 및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⑦ 구분	⑧ 접대비 발생액	⑨ 신용카드 거래분	⑩ 세금계산서거래분	⑪ 소액 접대비	⑫ 기밀비	⑬ 국외지출 접대비	⑭ 계 (⑨+⑩+⑪+⑫+⑬)	⑮ 명세서 제출대상 (⑧-⑭)
건 수								
금 액								
접대비 지출명세								
⑯련번호	⑰발생일자	접대비금액			지급처			
		⑱봉사료를 제외한 접대비	⑲봉사료	⑳계 (⑱+⑲)	㉑상 호 (법인명)	㉒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p>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세무서장 귀하</p>								
<p>※ 접대비지출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며 ⑪소액접대비란에는 ⑨, ⑩, ⑫, ⑬외의 거래 건당 10만원이하의 것을 기재합니다.</p>								

22226-59711일
1996. 2. 27 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배당세액공제신청서 작성요령

1. ④란의 종합소득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상의 ⑤소득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명세의 ⑧란을 기입합니다.
2. ⑤란의 배당소득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상의 ⑤소득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 명세의 ⑫란을 기입합니다.
3. ⑥란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별지 제40호서식(1) 부표상의 ㉞ 또는 ㉟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⑦란의 배당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당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⑧란의 배당수입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상의 ⑨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명세중 ㉑배당가산액이 기재된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㉒)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6. ⑩란의 공제대상세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상의 ⑨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명세 ㉑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토지등매대차의 계산명세서

관리번호

1. 인 적 사 황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				
2. 양도자산 명세					
⑥ 자산구분 코드					합 계
⑦ 자산종류					/
⑧ 부동산소재지					
3. 매매가액 계산					
⑨ 양도일자					/
⑩ 양도면적					
⑪ 기준시가					
⑫ 매매가액					
4. 매매차의 계산					
필요 경비	⑬ 취득가액				
	⑭ 설비비·개량비				
	⑮ 자본적지출액				
	⑯ 건설자금충당이자				
	⑰ 공과금				
	⑱ 필요경비계				
⑳ 장기보유특별공제					
㉑ 매매차의 (⑫-⑯-⑱)					

토지등매매차익계산명세서 작성요령

1. 관리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는 이 서식(부표)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3. ⑥자산구분란은 토지와 건물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자산구분	2년이상 보유	2년미만 보유	미 등 기
코 드	01	02	03

4. ⑫란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입하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⑪란의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합니다.

(예) 토지 : 양도면적 × 공시지가

건물 : 양도면적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단, 가감산 제외)

지정지역내 아파트등 :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5. ⑭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⑫란의 매매가액에 ⑱란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보유연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3년이상 : 10%, 5년이상 : 15%, 10년이상 : 30%)
6.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영 제143조 제1항의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⑫란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⑳란에 기입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양도소득세 세율

1) 2년이상 보유

과 세 표 준	세 율 (%)	누 진 공 제
3,000만원이하	30	-
6,000만원이하	40	300만원
6,000만원초과	50	900만원

2) 2년미만 보유 : 50%

3) 미등기양도 : 75%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신고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근무처	④ 명칭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		
소득공제명세(년도)							
공제대상	구분	⑧ 관계	⑨ 성명	⑩ 산입대상 소득의 소득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⑬ 공지역
	본인						
기본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						
	"						
	"						
추가공제	경로우대						
	"						
	장애자						
	부녀자						
	자녀양육비						
특별공제	"						
	보협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공제	기부금						
	계(또는표준공제)						
증제액계							
※ 참고사항(세액공제명세)							
공제종류	공제대상(저축)금액	공제율	세액공제액	증제한도액			
년 월 일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및 구비서류 : 뒷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신고서(소득공제신고서)작성요령등

가. 작성요령

1. 특별공제란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근로소득자로서 보험료·의료비등 각 항목별로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란에 기입합니다. 다만, 항목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6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표준공제와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외의 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표준공제만을 적용받습니다.
- 표준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⑬공제란에 60만원을 기재합니다.

2. 공제항목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면을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나. 구비서류 : 다음의 서류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 | |
|----------------------|----------------------|
|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1통 |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 |
|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환증명서 또는 주택마련저축통장 사본 |
| • 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 사본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 |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초)본 2통 |
| • 보험료납입증명서·영수증, 보험증권 | • 기부금납입영수증 |
| 사본 또는 보험료자동이체통장 사본 |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 |
|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금저축통장 사본 |
| • 교육비납입증명서 | • 기타 세액공제관련서류 |

(별지 제40호서식(1))

(제1면 앞쪽)

관리번호 -		()년()월()일()시()분()초		
① 기본사항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특별(광역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동 호 통 반			
④ 신고유형	11. 차가조정 12. 외부조정 20. 간이 30. 간이(표준율)	⑤ 신고구분		
⑤ 규모별	1. 일정규모이상 2. 일정규모미만 3. 비사업자	10. 정기	20. 수정신고	30. 경정
⑦ 주소지전화번호	⑧ 사업장전화번호	21. 서면분석 22. 기타 청구		
② 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33)	21			
소득금액계 (22)	22			
과세표준 (23)	23		151	
세율 (24)	24		152	
산출세액 (25)	25		153	
세액증제계 (224)	26			
감면세액계 (223)	27			
결정세액 (28)	28		154	
가산세액 (29)	29		155	
추가납부세액 (30)				
계 (28+29+30)	31		156	
기납부세액계 (31-153)	32		157	
차 감	환급세액 (33)		158	
	자진납부할세액 (34)		159	
	분납할세액 (35)		160	
	자진납부세액 (36)		161	
③ 국세환급금계좌신고		④ 세무대리인		
예입처 ①	은행 본·지점	관리번호 ②	전화번호 ③	
예금종류 ④	예금	조정번호 ⑤		
제작번호 ⑥		대리구분 ⑦	1. 기장 2. 신고 3. 신고서작성	
소득세법 제70조, 동법시령 제130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주된소득자) 백 우 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각 1부) 1. 소득금액계산명세서 2. 소득증명신고서 3. 기타서류(뒷쪽참조)				

22226-63151일
1996. 2. 27 개정

212 × 297 mm
(인쇄용지 3급 60g/m²)

작성요령

1. 관리번호와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2. 이 신고서는 아래순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가. ①기본사항
 - 나. ⑦소득금액계산명세 ⑨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계산명세 및 ⑩이월결손금명세
 - 다. ⑤소득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 ⑪원천납부세액명세 및 ⑥기납부세액명세
 - 라. ②소득세액의 계산 및 ⑧공제 및 감면명세
(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산출세액은 별지 제40호서식(1) 부표상의 산출세액 ⑳란, ㉑란 또는 ㉒란을 이기합니다)
 - 마. ③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바. ④세무대리의 경우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 사. 신고인 및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성명기입과 서명 또는 날인
3. 종합소득금액 ㉑란에는 ⑤소득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의 ㉒란을 이기합니다.
4. 소득공제 ㉑란은 ⑤소득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의 ㉑란을 이기합니다.
5.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⑧공제 및 감면명세의 해당각란을 기입한 후 세액공제합계액(㉑)란은 ㉑란에, 감면세액합계(㉑)는 ㉑란에 각각 이기합니다(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및 납세조합공제액은 세액공제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6. 가산세 ㉑란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를 기입합니다(국세기본법 제50조에 의한 수정신고납부가산세 포함).
7. 추가납부세액 ㉑란은 신고시 납부하는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있거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최저한세 적용대상사업자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으로 추가납부할 경우에는 해당세액을 기입합니다.
8. 기납부세액계 ㉑란에는 ⑥기납부세액명세의 ㉑란을 이기합니다.
9.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③국세환급금 계좌신고 ㉑~㉑란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정기성예금 및 적금은 수시인출이 불가능하오니 수시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금계좌개설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해당 각란 ㉑~㉑란에 기입하되, 기납부세액계 ㉑란은 ⑥기납부세액명세의 ㉑란을 이기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금액 ㉑란은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상의 감면세액합계 ㉑란을 이기합니다.
11.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인적사항 ㉑~㉑란을 세무대리인이 기입하여야 합니다.
13. 첨부서류란중 기타서류 : 당해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및 제102조의 해당서류를 첨부합니다.
14.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세 율 표 ('96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10	0	4,000만원 이하	30	500만원
1,000만원 초과	20	100만원	8,000만원 초과	40	1,300만원


(제2면 앞쪽)

관리번호		-		㉔ 소득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		
소득별 소득금액명세				소득공제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이자소득금액	㉑	종합소득공제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㉕)	㉖		
배당소득금액	㉒		인적공제	기본공제(명)	㉗	
부동산임대소득금액	㉓			추가공제(명)	㉘	
사업소득금액	㉔		특별공제	계	㉙	
근로소득금액	㉕			보험료공제	㉚	
일시재산소득금액	㉖			의료비공제	㉛	
기타소득금액	㉗			교육비공제	㉜	
				주택자금공제	㉝	
			기부금공제	㉞		
			계(또는 표준공제)	㉟		
종합소득금액계	㉘	종합소득공제계(㉙+㉟)	㊱			
		소득공제 계(㉖+㉟)	㊲			
㉕ 기납부세액명세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예납		㉑				
토지등 매매차 익의정	신고납부세액	㉒				
	예정고지세액	㉓				
납세조합징수세액		㉔				
수시부과		㉕		㉖		
원천 징수	이자소득	㉗		㉘		
	배당소득	㉙		㉚		
	사업소득	㉛				
	근로소득	㉜		㉝		
	기타소득	㉞				
기납부세액계		㉟		㊱		

22225-63152인
1995. 2. 27 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m²)

작성요령

1. 관리번호와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2. 소득별 소득금액 ⑤1~⑤9란은 ⑦소득금액계산명세상의 ⑩란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합계액과 ⑨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명세의 ⑩란의 소득별 합계액을 각각 이기하되, ⑤2란의 배당소득금액은 ⑩란의 금액(배당가산액)을 추가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상소득공제 ⑥1란은 ③공제 및 감면명세의 ⑫란의 소득공제계를 이기합니다.
4. 종합소득공제 ⑥2~⑥7란은 별지 제37호서식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 특별공제금액을 이기합니다.
5. ⑥기납부세액명세 ⑥1~⑥9란 및 ⑥11~⑥16란에는 기납부한 세금의 영수증인 중간예납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⑥6·⑥7란 및 ⑥12·⑥13란은 ⑨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명세상의 ⑩ 및 ⑩란의 소득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이기하며, ⑥8~⑥10란 및 ⑥14란은 ⑪원천납부세액명세의 ⑬란의 소득세 및 ⑬란의 농어촌특별세의 소득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각각 이기합니다.


(제3면 앞쪽)

관리번호	-	㉞ 소득금액계산명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㉞에 기재)					
일련번호 ㉞							
소득구분코드 ㉞							
소재지 ㉞							
상호또는법인명 ㉞							
사업자등록번호 ㉞							
신고유형코드 ㉞							
주업종표준율코드 ㉞							
총수입금액 ㉞							
필요경비 ㉞							
이월결손금 ㉞							
소득금액 ㉞							
배우자주민등록번호 ㉞							
㉟ 공제 및 감면명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㉞	㉞	㉞	㉞	㉞	㉞	㉞	
번호	구분(명칭)	코드	공제세액	번호	구분(명칭)	코드	
1				1			
2				2			
3				3			
4				4			
계(㉞=㉞)				계(㉞=㉞)			
조세감면규제법상소득공제			준비금		특별상각비		
㉞	㉞	㉞	㉞	㉞	㉞	㉞	
번호	구분(명칭)	코드	금액	번호	구분(명칭)	코드	
1				1			
2				2			
3				3			
4				4			
계(㉞=㉞)			계	계			

22226-63153인
1996. 2. 27 개정

210mm×297mm
(인쇄용지 2급 60g/m²)

작성요령

1. 관리번호와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2. ㉞소득금액계산명세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명세를 기입하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명세는 ㉟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명세에 따로 기입합니다.
3. ㉞소득금액계산명세는 소득별, 소득자별, 사업장·지급처별로 각 란에 구분하여 작성하되 해당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면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일련번호(㉞) : 소득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소득별 일련번호 마지막에는 소계를 표시합니다.(예 :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3개일 때에는 일련 번호 각란에 1,2,3, 소계의 순으로 표시)
5. 소득구분코드(㉞) : 부동산임대소득 30, 사업소득 40, 국내(각종)근로소득 51, 미국근로소득 52, 국외근로소득 53, 울종근로소득 55, 일시재산소득 65, 기타소득 60중 해당 소득코드를 기입합니다.
6. 상호 또는 법인명(㉞)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의 상호를 기입하고,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근무처·지급처의 상호를 기입합니다.
7. 신고유형코드(㉞) : 자기조정 11, 외부조정 12, 간이소득금액계산 20, 간이소득금액계산[(표준소득률)(비사업자 포함)] 30중 해당코드를 기입합니다.
8. 총수입금액(㉞) :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처별로 합계하여 기입합니다(같은 연도 귀속이면 월에 관계 없음).
9. 필요경비(㉞) :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처별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기입합니다.
10. 배우자 주민등록번호(㉞) :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제4면 앞쪽)

관리번호		⑨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계산명세							
⑩ 일련 번호	⑫ 소득 구분 코드	소득지급처		⑭ 총수입 금액	⑪ 배당 가산액 (Gross-up)	⑬ 소득 금액	원천징수세액		⑮ 배우자 주민 등록번호
		⑬ 법인명 (상호)	⑮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등록번호)				⑮ 소득세	⑮ 농어 촌 특별세	

22226-63154원
1996. 2. 27 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

작성요령

1.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작성순서 : 아래 각목의 순서에 따라 소득지급처별로 작성하되 각목별로 본인·배우자의 귀속소득순으로 작성하고 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면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가. 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 나 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
 - 다. 법 제1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소득
 - 라. 나목과 다목외의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중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의제배당과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은 제외)
 - 마. 나목 내지 라목외의 배당소득
 - 바. 가목외의 이자소득
4. 일련번호(㉞) : 3. 작성순서 각목의 소득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소득별 일련번호 마지막에는 소계를 표시합니다(예 : 본인의 이자소득 지급발생처가 3개의 금융기관일 때에는 일련번호 각란에 1, 2, 3, 소계 순으로 표시)
5. 소득구분코드(㉟) : 종합과세이자 11, 해외장기채권이자 12, 실지배당 21, 의제배당 22 중 해당 소득코드를 기입합니다.
6. 법인명(상호)(㊱) : 법인은 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를 기재합니다.
7.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㊲) : 소득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8. 총수입금액(㊳) : 지급처별로 합계하여 기입합니다(같은 연도 귀속이면 월에 관계 없음).
9. 배당가산액(㊴) 기입금액 :
 - 가. 3.작성순서 나목 및 다목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㊳)×법 제17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배당가산율
 - 나. 3.작성순서 라목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라목 내지 바목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 (1) (라목의 총수입금액<라목 내지 바목의 합계액중 4천만원 초과금액)인 경우
-라목의 총수입금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산율
 - (2) (라목의 총수입금액>라목 내지 바목의 합계액중 4천만원 초과금액)인 경우
-초과금액×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산율
10. 배우자주민등록번호(㊵) : 배우자의 금융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해당란에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㉑ 이 월 결 손 금 명 세						
이 월 결 손 금	㉒과세기간	㉓이월결손금 발생액	공 제 액			㉔잔 액
			㉕기공제액	㉖당기공제액	㉗보 전	㉘소 멸
	계					
㉑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㉒에 기재)						
㉓소 득 귀속연월	㉔소득구분	㉕상호또는 법인명	㉖소득금액 (수입금액)	㉗소득세	㉘농어촌 특별세	비 고
계						
작성요령 :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명세는 ㉒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계산명세에 따로 기입합니다. 2. 작성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면을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소득귀속연월(㉓) :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귀속연월을 기입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중 마지막 연월을 기입합니다(예 : '95년 6월이면 9506). 4. 소득구분(㉔)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중 해당소득을 기입합니다. 5. 상호 또는 법인명(㉕) : 지급처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 6. 소득금액(수입금액)(㉖) : 근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각각 기입합니다.						

	관리번호	-	이자소득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이자소득등 금액 명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소득 세 조 법 제 14 조 제 4 항	① 비영업대금이익		⑤ 국외이자·배당(원천징수분 제외)			
	② 상장외국증권의등록법인의주주배당		⑥ 합계 (④ + ⑤)			
	③ 비상장법인 주주배당		⑦ 기타 이자·배당소득			
	④ 소 계		⑧ 이자소득등의 금액(⑥+⑦)			
② 이자소득등의 금액(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이자소득등의 금액(⑧)이 종합과세기준금액(4,000만원)이하인 경우			
⑨ 종합과세기준금액		40,000,000원	⑭ 종합과세이자소득등의금액(④)			
⑩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⑧-⑨)			⑮ 배당가산액			
⑪ 종합과세 이자소득등의 금액(⑩과 ④중 큰것)			⑯ 이자소득등의 다른 종합소득 (⑬)			
⑫ 배당가산액			⑰ 종합소득금액(⑮+⑯+⑱)			
⑬ 이자소득등의 다른종합소득			⑲ 소득공제계(⑳)			
⑭ 종합소득금액(⑪+⑫+⑬)			㉑ 과세표준(㉒ - ㉓)			
⑮ 소득공제계(⑳)			㉒ 기본세율			
⑯ 과세표준(⑭ - ⑮)			㉓ 산출세액			
⑰ 기본세율			㉔ 국외이자·배당소득(⑤)×15/100			
⑱ 산출세액			㉕ 산출세액계(㉔+㉖)			
⑲ 기준금액세액 : ⑨×15/100 또는 (⑧-④)×15/100			㉖ 이자소득등 세액(⑧×15/100)			
㉑ 산출세액계(⑱ + ⑲)			㉗ 이자소득등의 다른종합소득 과세표준(㉘ - ㉙)			
㉒ 이자소득등 세액(⑧)×15/100			㉘ 기본세율			
㉓ 이자소득등의 다른종합소득 과세표준(⑬ - ⑭)			㉙ 산출세액			
㉔ 기본세율			㉚ 산출세액계(㉙+㉛)			
㉕ 산출세액			㉛ 종합소득산출세액 (㉚과 ㉛중 큰 금액)			
㉖ 산출세액계(㉕ + ㉖)			㉜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이자 소득을 분리과세남부신청한 경우			
㉗ 종합소득산출세액 (㉕과 ㉖중 큰 금액)						
			㉝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			
			㉞ 산출세액(㉝×30(25)/100)			
			㉟ 종합소득산출세액 (㉞+㉟)또는(㉚+㉟)			

22226-72611원
1996. 2. 27 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m²)

이자소득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작성요령

1.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부부합산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란에 작성합니다.
3. 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이하로서 다음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③란에 작성합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것
4.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으로서 분리과세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②란 또는 ③란에 의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을 작성합니다.
5. ①란 내지 ⑧란의 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 ⑨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액 계산명세의 총수입금액(⑩)을 해당 항목별로 구분하여 이기합니다.
6. ⑫, ⑳란 배당가산액은 ⑨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금액 계산명세의 배당가산액(㉑)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7. ⑬, ㉑란 이자소득등의 다른 종합소득은 별지 제40호서식(1) ⑤소득별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의 종합소득금액 계(㉒)에서 이자소득금액(㉓)과 배당소득금액(㉔)을 차감한 금액을 이기합니다.
8. ⑮, ㉑란의 소득공제는 별지 제40호서식(1) ⑤소득별 소득금액 및 소득공제명세의 ㉒란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9. ⑲란 기준금액세액란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⑩)이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합계금액(④)보다 큰 경우에는 4,000만원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표시하고, ④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자소득등 금액(⑧)에서 ④란 소계를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관리번호 - (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처산서 (단일소득자용(감연세액이 있는 자 제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특별(광역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등 호 통반		
④ 신고유형 11.차거조정 12.외부조정 20.간이 30.간이(표준율) ⑤ 신고구분		
⑤ 규모별 1.일정규모이상 2.일정규모미만 3.비사업자 10.경기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⑦ 주소지전화번호	⑧ 사업장전화번호	
② 사업장소재지 ③ 상 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업종표준소득율코드 ⑥ 총 수입 금액 ⑦ 필요 경비 ⑧ 이월 결손금 ⑨ 종합소득금액(㉘-㉙-㉚) ⑩ 소득공제 ⑪ 기본공제(명) ⑫ 추가공제(명) ⑬ 표준공제 ⑭ 계 ⑮ 소득공제액(⑩+⑬) ⑯ 과세표준(㉘-⑭) ⑰ 기본세율 ⑱ 산출세액 ⑲ 세액공제계(㉚) ⑳ 결정세액(㉘-㉙) ㉑ 가산세 ㉒ 총결정세액(㉘+㉒) ㉓ 성명 ㉔ 대리인 관리번호 ㉕ 전화번호 ㉖ 조정반번호 ㉗ 대리구분 ㉘ 1.기장 2.신고 3.신고서작성	① 중간역납액 ② 납세조합정수 ③ 수시부과 ④ 세원천징수 ⑤ 환급세액 ⑥ 차감납부할세액 ⑦ 분납할세액 ⑧ 자진납부세액 ⑨ ㉑ 번호 ㉒ 구분(명칭) ㉓ 코드 ㉔ 공제세액 1 2 3 ㉕ 세액공제계(㉚=㉛) ㉖ ㉑ 번호 ㉒ 구분(명칭) ㉓ 코드 ㉔ 금액액 1 2 ㉕ 세액공제액(㉛=㉜) ㉖ 국세환급금계좌신고 ㉗ 예입처 ㉘ 은행 본·지점 ㉙ 예금종류 ㉚ 예금 ㉛ 계좌번호	
소득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 일 자 인
구비서류(각 1부) 1. 소득공제신고서 2. 기타서류(뒷쪽참조)		

22226-63121일
1996. 2. 27 개정

210mm x 297mm
(인쇄용지 2급 60g/m²)

작성요령

1.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단일소득자가 사용합니다. 단,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세액이 있는 자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자는 별지 제40호 서식(1)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관리번호와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신고서는 아래순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가. ①기본사항
 - 나. ②소득금액계산명세 및 ⑩이월결손금명세
 - 다. ③소득공제 및 ⑧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
 - 라. ④세액계산 및 ⑦세액공제
 - 마. ⑤기납부세액 및 ⑫원천납부세액명세
 - 바. ⑥차감세액
 - 사. ⑨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아. ⑩세무대리의 경우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 자. 신고자 성명 기입과 서명 또는 날인
4. ③소득공제 ⑥①란의 조감법상 소득공제는 ⑧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 ⑫②란의 합계액을 이기합니다.
5. ③세액계산의 세액공제계 ⑫⑥란은 ⑫②란의 합계액을 이기합니다.
(납세조합공제액은 세액공제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6. ④세액계산의 가산세 ⑫⑨란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기입합니다.(국세기본법 제50조에 의한 수정신고납부가산세 포함).
7.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국세환급금 계좌신고 ⑫④~⑫⑧란에 기입합니다. 이 경우 적금 및 정기성예금은 수서인출이 불가능하오니 인출이 가능한 납세자의 예금계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금계좌개설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8.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9.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⑫④~⑫⑧란을 세무대리인이 기입하여야 합니다.
10. 첨부서류란중 기타서류 : 당해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및 제102조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1.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세 율 표 ('96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10	0	4,000만원이하	30	500만원
1,000만원초과	20	100만원	8,000만원초과	40	1,300만원

관리번호	-	⑪ 이 월 결 손 금 명 세				
이 월 결 손 금	①과세기간 ②이월결손금 발생액	공 제 액				③잔 액
	④기공제액	⑤당기공제액	⑥보 전	⑦소 결		
	계					
⑫ 원 천 납 부 세 액 명 세						
①소득귀속연월	②소득구분	③상호또는법인명	④수입금액	⑤소득세	비 고	
계						
<p>작성요령 : 1. 소득귀속연월(①) :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귀속연월을 기입합니다(예: '95년 6월이면 9506)</p> <p>2. 소득구분(②) : "사업소득"을 기입합니다.</p> <p>3. 상호 또는 법인명(③) : 지급처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입합니다.</p> <p>4. 작성면이 부족할 경우에는 면을 추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22226-63122일
1996. 2. 27 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m²)

관리번호		-		(년귀속)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 기본사항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도)	구,시,군	동,읍,면	가,리	번지 호 아파트,연립,상가 동 호 통 반	
④세대주와의관계	의		⑤세대주주민등록번호	-		
⑥신고구분	1. 정기 2. 수정신고 3. 경정청구		⑦주소지전화번호			
② 지급처별 소득명세	⑧지급처명	⑩입사연월일	⑬퇴직급여	⑭명액 퇴직수당	⑮단계퇴직 보험금	⑯계
	⑨사업자등록번호	⑪퇴사연월일				
		⑫근속월수				
③근속연수	⑰총근속월수	월	⑱중복월수	월	⑲근속연수	년
④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퇴직급여액 ㉑			세액공제 ㉒			
퇴직소득 ㉑×(50%,75%) ㉒			가산세 ㉓			
특공제근속공제 ㉔			총결정세액(㉒-㉓+㉔) ㉕			
과세표준(㉒-㉔) ㉖			기납부(원천)세액 ㉗			
연평균과세표준(㉖÷㉘) ㉙			환급세액 ㉚			
세율 ㉛			차감 자진납부할세액 ㉜			
연평균산출세액(㉙×㉛) ㉝			본납할세액 ㉞			
산출세액(㉖×㉛) ㉟			자진납부세액 ㉡			
⑤ 국세환급금계좌신고			⑥ 세무대리인			
예입처 ㉢	은행	본·지점	성명 ㉣	전화번호 ㉤		
예금종류 ㉥	예금		관리번호 ㉦	-		
계좌번호 ㉧	대리구분 ㉨		3. 신고서작성		접수(영수) 일자인	
소득세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 1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사용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신고서는 아래순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가. ①기본사항
 - 나. ②지급처별 소득명세
 - 다. ③근속연수
 - 라. ④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마. ⑤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바. ⑥세무대리의 경우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 사. 신고인 성명기입과 서명 또는 날인
4. ⑬란에는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⑩란 근속연수 계산시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합니다.
6. 퇴직소득공제중 퇴직급여액에 의한 공제 ⑭란은 퇴직급여의 100분의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7. 퇴직소득공제중 근속연수에 의한 소득공제 ⑮란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중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근 속 연 수	공 제 액
5년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1천 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8. 가산세 ⑲란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입합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수정신고납부가산세 포함).
9.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⑤국세환급금 계좌신고 ⑳~㉔란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정기성예금 및 적금은 수시인출이 불가능하오니 수시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금계좌개설 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반드시 신고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11.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㉕~㉗란을 세무대리인이 기입하여야 합니다.
12.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세 율 표 ('96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10	0	4,000만원이하	30	500만원
1,000만원초과	20	100만원	8,000만원초과	40	1,300만원

관리번호		-		(년월) 산립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 기본사항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특별(광역시, 도 구, 시, 군 동, 읍, 면 가, 리 번지 호 아파트, 연립, 상가 등 호 통 반				
④신고유형	11.차기조정 12.외부조정 20.간이 30.간이(표준율)			⑥신고구분	
⑤규모별	1.일정규모이상 2.일정규모미만		10.정기	수정신고	30.경정청구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21.서면분석 22.기타		
② 과세표준 및 세액			③ 소득금액 계산명세		
구분	금액		일련번호	④	
산립소득금액(33)	⑨		신고유형코드	⑤	
산립소득공제(600만원)	⑩		소재지	⑥	
과세표준	⑪		사업자등록번호	⑦	
세액	⑫		표준소득률코드	⑧	
산출세액	⑬		총수입금액	⑨	
세액공제(35)	⑭		필요경비	⑩	
감면세액(38)	⑮		이월결손금	⑪	
결정세액(13-14-15)	⑯		산립소득금액(20-31)	⑫	
가산세	⑰		④ 세액공제명세		
총결정세액(16+17)	⑱		구분(명칭)	⑲코드	⑳공제세액
기납부세액	㉑		재해손실세액공제		
환급세액	㉒		⑤ 감면세액명세		
자진납부할세액	㉓		구분(명칭)	㉔코드	㉕감면세액
분납할세액	㉖		산립개발소득감면		
자진납부세액	㉗		⑦ 세무대리인		
⑥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성명	㉘	
예입처	㉙	은행 본·지점	전화번호	㉚	
예금종류	㉛	예금	관리번호	㉜	
계좌번호	㉝		조정반번호	㉞	
			대리구분	㉟ 1.기장 2.신고 3.신고서작성	
소득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합니다.					접수(영수)
년 월 일					일자인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1. 조정계산서(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2. 기타 서류(뒷쪽참조)					

산림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이 신고서는 산림소득이 있는 소득자가 사용합니다.
2. 관리번호와 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3. 이 신고서는 아래순서에 의하여 작성합니다.
 - 가. ①기본사항
 - 나. ③소득금액계산명세
 - 다. ②과세표준 및 세액 ④세액공제명세 ⑤감면세액명세
 - 라. ⑥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마. ⑦세무대리의 경우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 바. 신고자 성명기입과 서명 또는 날인
4. 산림소득금액 ⑨란은 ③소득금액계산명세 ⑩⑪⑫⑬⑭⑮⑯⑰⑱⑲⑳㉑㉒㉓㉔㉕㉖㉗㉘㉙㉚㉛㉜㉝㉞㉟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의 금액을 이기합니다.
5.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④세액공제명세 및 ⑤감면세액명세의 해당각란을 기입한 후 공제세액(㉞)은 ⑭란에, 감면세액(㉟)은 감면세액 ⑮란에 각각 이기합니다.
6. 가산세 ⑰⑱란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보고불성실가산세등을 기입합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에 의한 수정신고납부가산세 포함).
7.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⑥국세환급금 계좌신고 ㉞~㉟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란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정기성예금 및 적금은 수시인출이 불가능하오니 수시인출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환급금 계좌개설신청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8.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9.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㉞~㉟㊱㊲㊳㊴㊵㊶㊷㊸㊹㊺㊻㊼㊽㊾㊿란을 세무대리인이 기입하여야 합니다.
10. 첨부서류란중 기타서류 : 당해 신고소득금액과 관련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 내지 제1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의 해당서류를 말합니다.
11.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합니다.

세 율 표 ('96귀속)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이하	10	0	4,000만원이하	30	500만원
1,000만원초과	20	100만원	8,000만원초과	40	1,300만원

[별지 제44호의2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저축의 종류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⑤ 월별	⑥ 납입일자	⑦ 납입금액	⑧ 비 고	⑤ 월별	⑥ 납입일자	⑦ 납입금액	⑧ 비 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p>							

22226-72911원
1996. 2. 27 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44호의3서식]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저축의 종류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⑤ 월별	⑥ 상환일자	상 환 금 액			⑩ 비고	⑤ 월별	⑥ 상환일자	상 환 금 액			⑩ 비고
		⑦원금	⑧이자	⑨계				⑦원금	⑧이자	⑨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⑪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p>											

22226-73011일
1996. 2. 27 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조정계산서 작성요령

1. ⑪란의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으로서 비과세 되는 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⑫란 및 ⑬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의 ⑦란 및 ⑧란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이때 ⑫란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에는 ⑮란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⑰란의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개시일전 5년내에 발생한 것중 그 후 연도에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 소득이나 산림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접대비등 조정명세서(1)				
①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상 호	③ 성 명	
1. 기밀비한도초과액 조정		3. 접대비 필요경비불산입액 조정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④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50억원한도)×1/100		⑩ 신용카드사용금액		
⑤ 기준수입금액×35/100,000 (5/10,000)		⑪ 필요경비산입한도내 접대비 (⑩-현물접대비)		
⑥ 기밀비 한도액(④+⑤)		⑫ 신용카드 사용비율 (⑩/⑪×100)		
⑦ 기밀비 해당금액		⑬ 신용카드사용 기준비율		
⑧ 기밀비 한도초과액 (⑦-⑥)		⑭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 (⑬-⑫)		
⑨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할 기밀비(⑦과 ⑧중 적은 금액)		⑮ 신용카드미사용 접대비부인액 (⑬×⑭)		
2.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⑩ 2,400만원×과세기간 월수()/12				
⑪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현재의 출자금액 (50억원한도)×2/100				
기 준 수 입 금 액	⑫ 부동산업등×5/10,000 (또는 1/1,000)			
	100억원이하×3/1,000			
	⑬기타 사업 100억~1,000억원×2/1,000			
	1,000억원초과×1/1,000			
소 계				
⑭ 접대비 한도액[⑩+⑪+(⑫ 또는 ⑬의 소계)]				
⑮ 접대비 해당금액				
⑯ 접대비 한도초과액(⑮-⑭)				
⑰ 필요경비 산입한도내 접대비 지출액 (⑭ 또는 ⑮중 적은 금액)				

접대비등 조정명세서(1) 작성요령

1. ⑤란의 기준수입금액은 명세서(2)의 ⑬란의 기준수입금액 합계를 적용합니다.
 2. ⑦기밀비해당금액란에는 명세서(2)의 ⑱란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3. ⑫란의 부동산업등의 기준수입금액란에는 명세서(2)의 소계의 ⑪란의 금액에 5/10,0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1,000을 적용합니다.
 4. ⑬기타사업기준수입금액란에는 명세서(2)의 ⑫기타란의 금액에 100억원 이하, 100억~1,000억원, 1,000억원 초과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3/1,000, 2/1,000, 1/1,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5. ⑮접대비해당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과 명세서(2)의 ⑰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기입합니다.
 6. ⑱~㉓란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 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⑱~㉓란의 기입을 생략하고 명세서(3)를 작성합니다.
 7. ⑲신용카드사용금액란에는 명세서(2)의 ㉒란의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8. 현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⑰란의 금액에서 현물접대비를 차감한 잔액을 기입합니다.
 9. ㉑신용카드사용 기준비율란에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특별시 지역은 75%, 광역시 지역은 60%, 시지역은 50%, 군지역은 40%를 기입합니다. 다만, (⑲-⑨)/⑲의 비율이 기준신용카드사용비율보다 적은 때에는 그 비율을 기입하고, ⑮ 접대비 해당금액이 연간 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하며, 사업연도중에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장 또는 변경후 사업장에 적용되는 신용카드비율중 적은 비율을 기입합니다.
- ※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경우의 '96귀속분에 대한 신용카드사용 기준비율은 50%로 합니다.

접대비등 조정명세서(2)							
①과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상호		③성명			
1.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							
④사업용자산의 합계액		⑤부채의 합계액		⑥출자금액			
2. 기준수입금액계산							
⑦구분		⑧부동산업	⑨소비서비스업	⑩특수관계거래	⑪소계 (⑧+⑨+⑩)	⑫기타	⑬합계
⑭기준수입금액							
3. 접대비등 해당금액 명세							
⑮계정과목						합계	
⑯계정금액							
접대비등 해당액	⑰접대비해당액						
	⑱기밀비해당액						
	⑲소계(⑰+⑱)						
	⑳신용카드사용금액						
㉑해당 부인액	㉒전대비						
	㉓기밀비						

접대비등 조정명세서(2) 작성요령

1. ⑭기준수입금액란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매출액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의 합계액(영업외수익은 제외)을 기입합니다.
2. ⑳신용카드사용금액란에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분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분의 합계를 기입합니다.

접대비등 조정명세서(3)						
①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 상 호		③ 성 명		
1. 신용카드사용 대상금액						
④ 구 분	기 밀 비			⑨ 접 대 비	⑩ 합 계 (⑩=⑧+⑨)	
	⑥ 사용 지역 확인금액	⑦ 사용 지역 미확인금액	⑧ 소 계			
⑤ 금 액						
2. 신용카드미사용 접대비부인액 계산						
⑪ 구 분	⑫ 특별시	⑬ 광역시	⑭ 시	⑮ 군	⑯ 국외	⑰ 합계
⑱ 접 대비 해당액						
⑲ 사용지역확인기밀비						
⑳ 사용지역미확인기밀비 (⑰ × ①⑧란의 ①②-①⑥)						
㉑ 총 접 대비 지출액 (⑱ + ⑲ + ⑳)						
㉒ 지역별 접 대비 지출액 (⑱ × ②①란의 ①②-①⑥)						
㉓ 신용카드사용금액						
㉔ 신용카드사용비용 (㉓ × 100)						
㉕ 신용카드사용기준비용						
㉖ 신용카드미사용접대비부인액 (㉔ × (㉕ - 3))						

접대비등 조정명세서(3) 작성요령

1. 명세서(3)은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카드미사용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기밀비란은 명세서(1)의 ⑨란의 금액을 사용지역이 확인되는 금액과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3. ⑨란은 명세서(1)의 ⑰란의 금액에서 동 서식 ⑨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4. ⑩란은 명세서(1)의 ⑰란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5. ⑱란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금액(명세서(2)의 ⑰란 합계금액)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국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6. ㉒란에는 별지 제7호서식 접대비지출명세서에 현물접대(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접대하는 경우에 한함)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기입합니다.
7. ㉓란은 접대비중 신용카드사용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국외지역으로 구분하여 집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합계금액은 명세서(2)의 ㉒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㉕란은 접대비를 지출한 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 광역시지역은 60%, 시지역은 50%, 군지역은 40%를 기입하며 국외지역은 납세지 소재지역을 기준으로 특별시지역은 75%, 광역시지역은 60%, 시지역은 50%, 군지역은 40%를 기입합니다. 이때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신용카드사용기준비율은 '96귀속분까지 50%로 합니다. 다만, $\frac{㉒ - (㉑ + ㉓)}{㉒} \times 100$ 의 비율이 해당 지역별 기준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율을 기입하고 ㉒란의 ⑰합계금액이 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9. ㉖란중 ㉒~㉕란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④1년간 계속 근로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은 ⑬계란의 금액을 이기하고, ⑪참가액란은 전기말 본인계상 장부상충당금 기초잔액에서 기중충당금 환입액 또는 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 제외)과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동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내에 기입하고 0으로 표기합니다.
2. ⑫누적한도액란은 ⑳란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하여 계산하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⑰란의 총급여액은 계정별로 기입하되 상여금을 포함하며, 급여액을 1년미만 근무한 종업원과 1년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⑩란 및 ⑱란에 기입합니다.
4. ⑯한도초과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⑪차감액란의 미달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별지 제68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감면세액 합계표				
① 과세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② 상 호		③ 성명
구 분	감 면 종 류	근 거	감면금액 (소득금액)	비 고
1. 소득공제	④ 해외사업소득공제	조감법 §20	()	별지 제40호서식(1) ㉓란의 해당금액
	⑤		()	
	⑥ 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공제금 액)×세율-산출세액
2. 세액 감면	⑦ 사업전환중소기업감면	조감법 §34		별지 제40호서식(1) ㉓란의 해당감면세액
	⑧ 기숙사운영사업감면	조감법 §90		
	⑨			
	⑩			
3. 세액공제	⑪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감법 § 5		별지 제40호서식(1) ㉓란의 해당공제세액
	⑫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조감법 §25		
	⑬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조감법 §26		
	⑭ 산업합리화시설투자 세액공제	조감법 §37		
	⑮ 근로자복지증진투자 세액공제	조감법 §88		
	⑯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에 대한 세액공제	조감법 §92 의4		
	⑰			
⑱ 감 면 세 액 합 계				

22226-66011일
1996. 2. 27 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관리번호	-	(자산양도차익예정)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신원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④자산구분	코드				합계
⑤양도소득금액					
⑥당해연도현재까지신고또는 결정된양도소득금액합계액(누계)					
⑦양도소득기본공제					
⑧과세표준					
⑨세율					
⑩산출세액					
⑪감면세액					
⑫토지초과이득세공제					
⑬기납부세액(산출세액)					
⑭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⑮수정신고가산세					
⑯자진납부할세액					
⑰분납(물납)할세액					
⑱자진납부세액					
⑲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영수인
구분	금액	년 월 일			
⑳소득세감면세액		한국은행 점			
㉑세율		우체국 수입공무원 귀하			
㉒산출세액		세입징수관(세무서장)			
㉓기납부세액(산출세액)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국세기본법			수수료
㉔수정신고가산세		제45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없음
㉕자진납부할세액		의하여(예정·확정·수정) 신고합니다.			
㉖분납할세액		년 월 일			
㉗자진납부세액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㉘환급세액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양도자산의 등기·등록관련 서류등본 1통 ○ 매매계약서 필요경비증명 서류 각 1부 ○ 감면신청서 1부 ○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고서 작성시의 유의사항

-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 ⑦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는 당해 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자 산 구 분	세 율
법 제94조 제1호 : 토지·건물	
2년이상 보유	30~50% 누진세율
2년미만 보유	50%
미등기양도	75%
법 제94조 제2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30~50% 누진세율
법 제94조 제4호 : 비상장주식	
일반법인의 주식	20%
중소기업법인의 주식	10%
법 제94조 제5호 : 기타자산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 : 과점주주 주식	30~50% 누진세율
제3호 : 영업권	30~50% 누진세율
제4호 : 특정시설물이용권	30~50% 누진세율
제5호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30~50% 누진세율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 도 자 산											
① 자 산 구 분	<small>코 드</small>										합 계
② 소 재 지											
③ 자 산 종 류											
양 도 가 액 계 산											
④ 양 도 일 자											
⑤ 양 도 면 적											
⑥ 분 류 번 호 및 가 액											
⑦ 공 시 지 가											
⑧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및 공 제 액 계 산											
⑨ 취 득 일 자											
⑩ 취 득 면 적											
⑪ 등 급	취 득 당 시										
	'90. 8. 30										
	'90.8.30 직 전										
⑫ 시 가 표 준 액	적 용 비 율 및 가 액										
	분 류 번 호 및 가 액										
⑬ 공 시 지 가	취 득 당 시										
	'90. 1. 1										
⑭ 지 정 지 역	최 초 고 사 당 시 기 준 시 가										
	아 프 트 취 득 당 시 기 준 시 가										
⑮ 취 득 가 액											
⑯ 필 요 경 비											
⑰ 양 도 차 익											
⑱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⑲ 양 도 소 득 금 액											

22226-67622인
1996. 2. 27 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m²)

작성요령

◦ 양도자산

1. ① 자산구분란은 다음의 자산구분 및 그 코드를 기재합니다.

자산구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비상장주식		기 타 자 산			
	2년이상 보유	2년미만 보유	미등기 양도		일반	중소기업	과점주주 주식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 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양도가액계산

2. ⑧ 양도가액란은 토지의 경우 ⑤×⑦, 건물의 경우 ⑤×⑥의 가액, 지정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3. ⑪ 등급란은 해당란의 등급 및 그 가액을, ⑫ 시가표준액란 상단은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적용비율과 공시지가에 그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96.1.1이후 취득분만 기재함)을, 하단은 건물에 대한 분류번호 및 그 가액을 기재합니다.

4. ⑮ 취득가액란은 토지의 경우 ⑩×⑬(공시지가 시행전 취득의 경우 ⑪ 등급가액으로 호나산한 가액), 건물의 경우 ⑩×⑫의 가액('96.1.1이후 취득분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정지역내 아파트의 경우 취득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⑭ 지정지역 아파트란은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이면서 취득당시에는 국세청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6. ⑯ 필요경비란은 토지의 경우 ⑩×⑪의 가액('96.1.1이후 취득분은 ⑫의 가액)×10%, 건물의 경우 ⑩×⑫의 가액('96.1.1이후 취득분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함)×10%를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공제액계산

7. 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모든 토지·건물의 ⑱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3년이상 : 양도차익의 10%
- 5년이상 : 양도차익의 15%
- 10년이상 : 양도차익의 30%

[별지 제85호서식]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매 각 의뢰 부 동 산		
④ 자 산 명	⑤ 소 재 지	⑥ 면적(㎡)
토 지		
건 물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성업공사사장 귀하</p>		
<p>구비서류 : 1. 토지·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및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대장 등본 3.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p>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신청인	접수일자	접수번호	자 산 명	소 재 지	면적(㎡)
<p>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성업공사 사장 위 대리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22226-73111인
1996. 2. 27 제정

210mm × 297mm
(인쇄용지 2급 60g/㎡)

[별지 제87호서식]

양도소득세물납승인통지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 :)	
승 인 내 용		
④ 승인신청일자	⑤ 승 인 일 자	⑥ 물납양도소득세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승인신청한 귀하의 양도소득세 물납신청을 승인하오니 당해 물납재산을 년 월 일까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19</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세무서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22226-73311일
1996. 2. 27 제정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 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 시행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관세법에 의하여 받는 포상금등과 성격이 비슷하므로 비과세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영 제10조 제2항).
- 나. 종전에는 보험료공제 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하여 연말정산때마다 각종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공제를 받는 첫해에만 증명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자동이체통장 또는 저축통장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58조 제2항).
- 다. 종전에는 소득세 중간예납분납신청서를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과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66조).
- 라.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1년이내에 처분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 기간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기존의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가 진행중인 때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72조).
- 마.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장기채권인 개발신탁수익증권중 중도해지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날을 최종상환일로 보아 신탁기간을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함(영 제88조의2).

〈법제처 제공〉